

법정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박기석*

국문요약

우리나라 형법은 구성요건 뿐 아니라 법정형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사형이 남아 있으며 자유형의 법정형기는 과도한 중형주의에 입각해 있다. 벌금형은 자유형에 비해 그 가액이 너무 과소하며 특히 법인에 대한 벌금형은 그 액수나 내용이 현실에 낙후되어 있다. 실용가능성이 매우 낮은 명예형이 버젓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권의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이 아직도 남아 있다.

따라서 정당성도 효율성도 없는 사형은 시급히 폐지되어야 하고, 중형주의에 입각해 있는 형사특별법도 대부분의 규정을 없애야 한다. 다만 형법전 내에 흉악범이나 악질범에 대해 장기간의 자유형을 부과하는 규정은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형폐지에 대비하여 장기간 구금형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벌금형은 현대사회에서 유용성이 크기 때문에 액수를 높여 실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수벌금제는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법인에 대한 벌금액은 자연인에 비해 현격히 높아야 한다. 그 쓰임이 적고 효율성도 높지 않은 명예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치욕형에 해당하는 신상공개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하고, 다만 법인에 대한 형벌로서의 공포제도는 도입할 만하다. 징역과 금고는 징역형으로 통일되어야 하고, 구류와 과료도 폐지되어야 한다. 보안처분 및 형벌에 있어 현대형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사제재를 고안, 도입하여야 한다.

*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I. 서론

지금까지 형법에 관한 연구가 범죄 구성요건의 해석과 입법에만 치중되어 법정형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탐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범죄를 범하여 형벌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받을 형벌의 종류와 양이 범죄 구성요건보다 훨씬 중요하게 다가온다. 따라서 법정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하는 것은 일반예방, 특별예방 모두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이와 같은 법정형의 문제가 구성요건에 비해 연구가 부족하여 많이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형벌의 종류와 내용이 새롭게 단장을 하지 못하고 몇 십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결과, 적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형법전의 법정형의 문제로는 사형이 존치되어 왔고, 범죄 간 법정형의 불균형이 시정되지 못했으며, 불합리한 가중 규정이 정비되지 못하였다. 형사특별법은 중형주의에 입각하여 실제로 선고되지도 않는 과중한 징역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형도 심심찮게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은 자유형에 비해 상당히 낮게 법정되어 있다. 행정형법의 경우에는 아직도 비범죄화하여야 할 내용이 많으며, 법정형에 있어서 벌금형의 비율이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다.

법정형을 적정하게 정비하여 완결 짓는다는 것은 실로 방대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논문 한편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거론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작업도 연구와 입법을 거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지혜와 실천력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중장기에 걸쳐 해결해야 할 문제(예컨대 범죄간의 법정형 균형)들은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II. 사형제도

사형은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다. 한 인간의 생명을 강압적으로 단절시

킨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뺏는 것이다. 법이라는 제도로 사람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옳은 것일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법정형의 정비는 사형을 폐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사형폐지는 법정형 정비 기본 중의 기본이다.

첫째, 법은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법이 인간을 지배할 수도 없고 지배해서도 안된다. 더욱이 법이 사람의 생명까지 뺏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형은 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월권이라 할 것이다.¹⁾

둘째,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인간 생명보다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가 있을까? 헌법의 이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이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라 할 것이다.²⁾

셋째, 사형이 범죄억제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다.³⁾ 형벌이 무겁다고 반드시 그에 비례하여 범죄가 억제되는 것만은 아니다.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잔혹할 때에는 국민의 법 준수를 향한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고, 국가의 진정한 권위가 실추되어 국가가 마련한 제도에 잘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또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범죄적발을 피할 궁리를 하게 되지, 범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지 않는다. 따라서 사형을 폐지하여 형벌을 순화하고 적발의 확실성을 높이는 길이 국민의 자발적 법 준수를 유도하는 최선의 길이다.⁴⁾

넷째, 오판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인간의 재판에서 회복할 수 없

- 1) 심재우, “인간의 존엄과 사형폐지론”, 사형폐지운동협의회 세미나 자료집, 2000. 10. 16, 19면; 박선영,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 사법행정, 97/2, 42면.
- 2) 배종대, 형법총론, 2000, 688면; 심재우, “사형제도의 위헌성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자료집 제7집, 1995/12, 95면; 허일태, “형사실체법 정비를 위한 근본적 고찰”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 2006, 414면.
- 3) 사형과 살인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사형폐지에 따른 살인율 증가가 없었다는 연구로는 T.Sellin, “The Death Penalty and Police Safeth, 1955, in T. Sellin ed. 1967, Capital Punishment, 278-279면이 있다. 한편 사형이 1년간 1건의 사형집행을 추가로 실시할 때마다 7-8건의 살인이 억제되었다는 주장으로는 I. Ehrlich, “The Deterrence of Capital Punishment : A Question of Life and Dea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5, 1975, 397-417면 참조.
- 4) 박기석,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3호, 86면 이하 참조.

는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⁵⁾ 형 집행관⁶⁾이나 사형수의 가족에게⁷⁾ 미치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다.

다섯째, 사형의 효과는 석방의 가능성이 희박한 최장기의 구금형으로 얼마든지 이를 수 있다.⁸⁾ 죄수를 감금해 둘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시설이 있음에도 굳이 사형을 시킨다는 것은 국민을 향해 겁을 주기 위한 발상이거나 전근대적 상황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몇 십명 죽이든, 가족들 보는 앞에서 여자 가족을 강간한 범죄자이든, 어떠한 인면수심의 범죄자도 사회와 완전히 격리할 수 있다면 사형을 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여섯째, 사형은 인간에 대한 이해부족의 산물이다. 인간은 누구라도 회오(悔悟)와 뉘우침이 가능한 존재이고, 법은 이와 같은 회생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형은 이러한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므로 인간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아무리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인간도 올바른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또 돌아오는 것이 이치에 오히려 더 부합한다.

Ⅲ. 자유형

1. 징역형과 금고형

우리 형법은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수형자에게 노역을 부과하는 자유형이고, 후자는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자유

5) 이형국, 형법총론, 1990, 444면; 정봉휘, “사형존폐론의 이론사적 계보”, 손해목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3, 505면; 유지영, “사형폐지에 관한 소고”, 교정연구 제 8호, 1998, 237면 이하; 한인섭,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24-227면.

6) 박선영,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하)”, 사법행정, 1997/3, 32면.

7) 한상암, “사형존폐논쟁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집, 1993, 23면; 허일태, “사형제도의 폐지필요성”, 이형국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8, 771면.

8) Furman v. Georgia, 408 U.S. 238(1972), 310-314면. White 판사의 사형 위헌 판결에서는 사형이 징역형보다 사회방위(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형이다. 징역형과 금고형을 단일화하여 자유형으로 통일하자는 의견과 현행대로 구분하자는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

먼저 현행대로 구분하여 존치시키자는 의견⁹⁾은 첫째, 수형자의 개선에 따른 과학적 분류에 의하여 합리적인 처우가 가능하고 특히 정치범이나 과실범에 대하여는 노역이 의무적이 아닌 금고가 의미있다고 한다. 둘째, 국민의 통상적인 감정상 정치범, 사상범, 과실범 등에 대해서는 수형자의 명예를 고려하여 노역에 처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 셋째, 강제노역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행형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입법과 재판단계에서부터 구분하는 것이 옳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의 수형자 분류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해 징역형과 금고형을 단일화하여 자유형으로 통일시키자는 의견¹⁰⁾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내세운다. 첫째, 자유형의 목적인 사회안전 및 수형자 재사회화라와 노역 여부는 상관이 없으므로 징역과 금고를 구분할 필연성이 없다고 한다. 둘째, 파렴치범이라는 개념도 명확한 것이 아니며, 확신범이나 과실범에도 징역이 부과되는 경우¹¹⁾가 있다. 셋째, 파렴치범이라는 구분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면 수형자에게 낙인효과만을 부여하여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지장만 준다고 한다. 넷째, 금고형의 선고비율이 0.3%에 불과하여 이용가치가 낮으며, 다섯째,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자유형의 단일화라는 것이다.¹²⁾

생각건대,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분하지 말고 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징역형(혹은 자유형)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위의 주장과 더불어 법은 단순, 명료한 것이 좋은 것이다. 불필요하게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 때, 법은 국민의 상식적인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수형자의 특징과 요구를 참작하여 행형 실무가들이 징역 부과 여부를 합리적으로 정하면 족할 것이다.

9)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05, 630면;

10)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2, 536면;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2, 509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사, 2001, 648면; 허일태, “형사실체법 정비를 위한 근본적 고찰”, 417-418면.

11) 내란죄(형법 제87조), 간첩죄(형법 제98조),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 등

12) 허일태, “형사실체법 정비를 위한 근본적 고찰”, 418면.

2. 장기자유형의 도입

현재 징역형의 장기를 적정하게 장기화하자는 의견이 있다. 징역형기를 30년 내지 40년 등으로 장기화하자는 의견이 최근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¹³⁾ 이에 대해 일반예방효과를 노리기 위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장기형은 오히려 폐해가 클 뿐이어서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¹⁴⁾

생각건대 단순히 일반예방효과를 노리기 위해 중형주의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음은 분명하나, 사형제도의 폐지와 관련시켜 자유형을 생각해 볼 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닌 듯 싶다. 사형을 폐지하게 되면 이른바 흉악범 등에 대해 거의 그의 일생 동안 구금시켜 둘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무기징역이 있긴 하지만, 무기징역도 작량감경이 가능하고 10년 이상의 수형생활 후에 가석방될 수 있다. 또한 ‘무기징역’이라는 말이 ‘일생동안’이라는 말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형기 없는 징역’이라는 의미로도 들린다. 무기징역이라도 때가 되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그렇다면 장기구금 형태를 보다 체계화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사형제도 폐지를 전제로, 무기징역형은 20년이 지난 후에야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형기의 1/3이 지나서야 가석방이 가능하다면, 20년 이전에 가석방될 수 있는 장기형은 둘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징역 45년 형은 15년이 지나서야 가석방될 수 있으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를 논하면서 자유형의 장기화를 준비해 두지 않으면 흉악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흉악범이 적어도 20-30년간 복역하여 피해자나 사회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혹은 예측가능성)을 피해자나 일반인에게 심어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¹⁶⁾

13) 오영근, “법정형상의 징역형기 조정방안”,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415면.

14) 오영근, “법정형상의 징역형기 조정방안”, 415면.

15) 현재 무기징역형의 실제 복역기간은 평균 16년 정도라고 한다.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이유서, 1992, 53면.

문제는 이러한 장기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이다. 대체로 현재의 사형을 법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을, 무기징역형을 법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40-50년의 장기형을 법정하면 될 것이다. 상상적 경합이나 실제적 경합은 현재와 같이 유지해도 각 개별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면 형이 과소하다는 비판은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¹⁶⁾ 유기징역을 가중할 때에도 현재의 25년에서 40년 정도로 장기화하여야 균형이 맞을 것이다. 가석방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이상 복역시, 유기징역의 경우 1/3이상 복역시 심사하여 인정하도록 한다.

이 문제에서 꼭 유의할 것은 이러한 자유형의 장기화가 중형주의 사고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도 폐지에 따른 대비이며, 일부 흉악범이나 악질범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매우 긴 시간의 구금을 인정함으로써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3. 범죄간 법정형의 불합리 불균형의 시정

우리 형법 규정을 살펴보면 개별 범죄간의 법정형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의문이 가는 경우가 있다. 그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의 신체에 대한 범죄와 재산에 대한 범죄의 법정형이 균형적인지 의문이다. 예컨대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폭행죄나 상해죄의 보호법익이 사람의 신체로써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보다 우위에 있는 법익이라면, 폭행죄나 상해죄보다 사기죄의 법정형이 높은 이유

16) 사형제 폐지에 따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견해로는 허일태, “사형폐지와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2000, 223-236면 참조. 그러나 수형자에게 구금에서의 해방이라는 희망을 완전히 뺏은 것은 최선의 방안은 아닌 것 같다. 매우 긴 시간이라도 나중에는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주는 것이 인간적인 면이나 형사정책적인 면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다.

17) 유기징역형을 가중할 때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자는 의견으로는 허일태, 앞의 논문, “형사실체법 정비를 위한 근본적 고찰”, 420면.

는 없다고 본다. 사기죄로 인한 이익은 몰수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사기죄로 인한 보호법익의 침해는 폭행죄나 상해죄의 그것보다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지금보다 낮추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 외 재산죄의 법정형도 상대적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폭행죄와 상해죄의 법정형의 폭이 지금과 같이 현격하게 차이나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완전성, 상해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생리적 기능으로 구분할 때, 상해죄의 보호법익이 보다 중대하고 우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구분이 명확한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상해진단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폭행고의와 상해고의를 구분해 내는 것도 명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¹⁸⁾

그렇다고 하여 상해와 폭행을 구분하여 규정한 이래 양자의 구분에 관한 학설과 판례가 쌓인 현 상황에서, 구 형법으로 돌아가 상해를 폭행의 결과적가중범의 형태로 이해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분하되 법정형의 폭을 줄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셋째, 강도상해·치상죄의 법정형이 7년 이상이어서 작량감경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현 실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면 법원이 감경사유를 애써 찾아주거나 강도상해죄 인정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¹⁹⁾ 이 문제 역시 폭행과 상해의 구분에 기초하여 상해의 비중을 너무 과도하게 인정하는 사고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살인죄의 하한이 5년인 점을 생각한다면, 강도치상죄의 하한이 7년이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금방 알 수 있다. 결국 강도상해·치상죄는 4년 이상 12년 이하 정도의 징역으로 법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넷째, 하한을 정하고 상한은 15년으로 하는 법정형이 많은데 대체로 하한을 낮추고 상한도 15년 이하 적정범위로 제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논한 강도상해·치상죄 외에 강간상해·치상죄, 체포·감금치사상죄, 현주건조물방화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기차선박등의교통방해죄, 교통방해치사상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보호법익의 성격이나 중대함에 비추어 볼 때 하한이 너무 높지 않은지도 살펴보아야 할 뿐 아니라,

18) 오영근, “법정형상의 징역형기 조정방안”, 417-418면.

19)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도2324 판결. 이 판결에 대한 설명은 오영근, “법정형상의 징역형기 조정방안”, 419-420면 참조.

상한도 15년 상한이 있으므로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각각 범죄의 경중에 비추어 상한도 마련해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컨대 도로표지를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가 15년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아도 합당치 않다. 따라서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정도로 낮추는 것이 옳다. 한편 하한의 경우에도 예컨대 감금치상죄는 반드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것도 합당치 않다. 이 정도의 범죄이면 7년 이하의 징역 정도가 합당할 것이다.

다섯째, 직계존속에 대한 가중된 법정형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²⁰⁾

결국 전체 형법의 합리적 법정형은 전체 범죄의 종합적 시각에서부터 출발하여 개별 범죄의 합리적 법정형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형법 전체의 골격을 합당하게 세우고 세부적 범죄의 합당한 법정형을 찾아나가는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종류와 경중, 범죄의 수단과 방법, 결과, 주관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법정형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4. 기 타

학계에서는 예비의 중지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를 해 왔다. 예비·음모의 중지는 예비·음모죄의 법정형에서 필요적 감면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즉 “본 죄를 위하여 예비·음모한 자가 자의로 본죄에 나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예비·음모의 형에서 감면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법정형은 무슨 징크스처럼 홀수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유 없는 관습이라 할 것이다. ‘관습형벌’과 같은 홀수 년 형기를 지양하고 개별범죄마다 합리적 기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작량감경의 경우 무조건 반이 아니라 반 이상의 형기에서 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²¹⁾ 구체적 타당성 있는 양형을 위해서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20)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박기석, “폭력범죄 규정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665-669면 참조.

21) 오영근, “법정형상의 징역형기 조정방안”, 416면.

구류형은 폐지하고 징역형으로 통일하는 것이 옳다.²²⁾ 단기간의 구금형도 징역형으로 선고하여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내용의 구금형을 기간에 따라 나누어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법에 대한 어려움만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IV. 벌금형 정비

1. 벌금형 확대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돈’을 중시하는 사회라는 점이다. 특히 자본주의 하에서 ‘돈’을 벌기 위한 경쟁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범죄를 범하는 이유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범죄의 원인 및 대책 양면에서 벌금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비중도 높여야 하고 벌금형의 액수도 높여야 한다. 자유형이 주형이고 벌금형은 부수적인 형벌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자유형과 벌금형을 비교하였을 때 타격의 정도가 비슷하게 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범죄의 원인이나 상황에 비추어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동일한 범죄라도 수단, 방법, 결과 등이 중할 때에는 자유형을, 경할 때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사고가 아닌, 자유형과 벌금형 중 구체적 범죄수행의 형태에 따라 효율적인 형벌을 법관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²³⁾

더 나아가 자유형과 벌금형의 선택이 아닌 병과도 가능하도록 법정할 필요가 있다. 자유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였을 때 합당한 선고형이 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돈을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벌금형도 부과할 필요가 있지만, 범죄 수단이나 대상을 볼 때 자유박탈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2) 박상기, 형법총론, 510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648면; 허일태, “형사실체법 정비를 위한 근본적 고찰”, 423면.

23) 박기석, “벌금형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9-10면.

2. 법인에 대한 벌금형 증액

현재의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해 자연인의 벌금형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은 자연인에 비해 볼 때 구조, 범죄수행의 형태, 책임의 본질 등에서 자연인과 전혀 다르고, 현재 법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벌은 벌금밖에 없으며, 법인범죄는 주로 ‘이욕(利慾)’에 그 동기가 있으며, 자산규모도 자연인에 비해 현격히 크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는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²⁴⁾ 최선의 방법은 양벌규정을 폐지하고 법인범죄에 대한 합리적 규정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양벌규정을 존치하되 벌금형의 액수를 증액시켜야 한다.

3. 일수벌금제

독일의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많다.²⁵⁾ 동일한 범죄에 대해 행위자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같아야 한다는 사고를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부자에 대한 질시, 빈자에 대한 동정도 있을지 모르겠다. 독일 제도에 대한 무비판적인 선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일수벌금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 범죄자가 느끼는 타격의 정도가 동일해야 한다는 가치보다 ‘형벌은 범죄의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이어야 한다는 책임주의가 더 중요하다.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사람의 재산과 상관없이 동일한 정도의 형벌이 주어져야 한다. 부자라고 더 많은 벌금을 징수한다면 책임주의에 어긋난다.

둘째, 자본주의 원리를 무시하고 있다. 법도 사회 전반의 제도와 발맞추

24) 이 문제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山本和昭, “兩罰規定における業務主に對する罰金額と行爲者に對する罰金額の連動の切離しについて”, 判例時報, 1402號, 3面 이하; 岩橋義明, “兩罰規定における罰金額の連動の切離しについて”, 判例タイムズ 773號, 61面 以下 참조.

25) 손동권, 형법총론, 635면; 이재상, 형법총론, 539면; 강동범, “재산형의 문제와 개선방향”, 83면; 이영란, “벌금형제도 소고: 벌금양형을 중심으로”, 221면; 서보학, “벌금형제도 소고:비판과 입법론적 대안”, 형사정책 제10호, 1998, 79면; 허일태, “형사실체법 정비를 위한 근본적 고찰”, 422면.

어 정비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선의경쟁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돈을 벌고 저축하는 것은 사고나 재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벌금도 재난 중의 하나이다. 평소 돈을 열심히 벌고 저축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형벌의 타격이 적은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다. 부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벌금을 더 내고 고통도 같이 받으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이 미덕인 자본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셋째, 현실적으로 세금도 정확하게 거두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사람의 부를 측정하여 벌금액을 책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셀러리맨들과 자영업자들의 세금납부가 불균등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 현실을 외면한 채 탁상공론식으로 일수벌금제를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

V. 명예형

1. 형법상 명예형의 실태와 개선방안

1) 실태

명예형은 범죄인의 명예 내지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은 명예를 박탈하는 형벌은 두지 않고 자격을 박탈하는 형벌인 자격상실고 자격정지를 두고 있다.

자격상실이란 일정한 형벌을 선고받으면 그의 부수효과로서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 i) 공무원이 되는 자격, ii)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iii)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iv)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 상실된다(형법 제43조 제1항).

자격정지는 ii) 공무원이 되는 자격, ii)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iii)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된다(형법 제

43조 제2항).

그 외 형사특별법이나 행정형법에 자격정지가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규정되어 있다.²⁶⁾

2) 문제점

첫째, 자격박탈 명예형은 범죄인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보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즉 일정한 범죄를 범한 자는 국가를 유지하는 공무를 담당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선거에 참여할 수도 없는 사회적응 부적합자로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법률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공무 및 심지어 사적인 영역인 법인의 기관이 되는 것조차 봉쇄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조그만 구멍가게나 내어서 목숨이나 유지하라는 형벌이나 마찬가지이다.

둘째, 일정한 공무의 경우 자격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그 제한은 개별 공무 영역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살려 제한적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형벌을 받으면 영역에 상관없이 자격박탈을 무제한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3) 개선방안

명예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²⁷⁾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공무 영역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입법은 당해 공무에 관한 법령에서 범죄의 종류, 기간, 횟수, 범죄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일정기간 당해 공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선거권의 경우에도 당해 피선거권의 영역에 따라 구체적인 제약 내용을 관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선거권의 경우에는 극히 일부 범죄(형법상의 내란죄, 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법 등)의 수형자 외에는 복역기간 후에는 물론이고 수형기간 중에

26) 구체적 내용은 서보학, “명예형의 제문제”,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429면 참조.

27) 동취지 서보학, “명예형의 제문제”, 438면 이하.

도 인정하는 것이 옳다. 선거권이란 국민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사회구성원이라는 증명원이나 같은 것이다. 이러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그를 사회구성원에서 제외시키는 조치와 같다. 특히 수형기간 중에도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는데 용이하므로, 재사회화 견지에서도 선거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법인의 기관이 되는 것을 박탈하는 것은 무분별한 기본권 박탈이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사적인 영역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 기본권 제한이다.

결국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는 형벌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제도이다. 내용도 불합리할 뿐 아니라 형벌체계만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법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명예형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신상공개

청소년성보호법은 제20조(범죄방지 계도)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별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사실을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수회에 걸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 인터넷 등에 적나라하게 공개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이 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신상공개가 형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²⁸⁾ 그러나 형식이나 절차를 떠나 당사자에게 주는 해악은 벌금이나 징역형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신상공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되어야 한다.

첫째, 신상공개는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주어 이 사회에서 발붙이기 어렵게 만드는 형벌이다.²⁹⁾ 둘째, 이미 형벌을 받은 자에게 신상

28) 신상공개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신상공개 제도의 법적 성질을 형사제재로 이해하지 않는 견해로는 심희기, “신상공개의 정당화근거와 공개기준의 탐색”, 법학심포지움, 한국법학원 2001. 12, 33면.

29)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형사정책학회 발표논문,

공개라는 제재를 또 부과하는 것은 2중 처벌금지원칙, 책임주의에 위배된다.³⁰⁾ 셋째, 특별예방은 물론이고 일반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감정적인 형사제재이다.³¹⁾ 넷째,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치욕과 불명예를 안겨주어 죄 없는 사람들까지 사회생활에 지장을 준다.³²⁾ 신상공개 제도의 폐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문한다.

3. 법인에 대한 명예형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가 이를 기초로 범죄를 범했다면 사회적 명예를 박탈하는 형사제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며, 일반인도 그러한 자의 범죄내용을 파악하여 신뢰를 거둘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세금체납자 명단 공개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연인에 대한 명단공개는 일반인의 그 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철회라는 효과를 넘어 인격적 모독이나 무시에까지 이를 수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법인에 대한 명예형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인격적인 치욕이나 불명예라는 감정적인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명예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인이 일정범위를 넘어서는 중범죄(일정액 이상의 탈세, 일정 피해 이상의 환경오염행위, 일정액 이상의 사기, 횡령, 배임, 불법 정치자금 제공행위, 근로기준법이나

2001 참조.

30) 이경재, 앞의 논문, 11면; 한상훈,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몇가지 쟁점”, 형사정책연구소식 제57호, 2000 1/2월호, 28-29면; 권창국, “청소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46호, 2001 여름호, 219면; 이병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2001, 129면.

31)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신상공개 전인 8월에 55건이었는데 비해 공개된 후인 9월에는 78건이었고, 구속자는 8월에 35명에서 65명으로 증가했다. 성폭력범죄는 8월에 965건이고 9월에 960이며 구속자는 368명에서 416명으로 증가했다(한겨레 2001. 10. 14). 한편 신상공개 시행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가 감소되었다는 보고는 나오지 않고 있다.

32)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로는 이병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2001, 143면.

노동법 위반행위 등)를 범한 경우에 법인명, 범죄내용, 처벌내용 등을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개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당해 법인의 범죄내용을 알게 하는 것이다.³³⁾

법인은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익을 취하므로, 법인이 이와 같은 신뢰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그 신뢰를 깎아내리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VI. 상습범 및 누범

1. 상습범 가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습범의 가중처벌은 형법각칙에서 개별범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상습아편 등 제조 흡식 등의 죄(제203조), 상습상해 폭행죄(제264조), 상습 체포 감금죄(제279조) 등 다수가 있다. 그 외에 형사특별법에도 일부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이 있다.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행위자가 그릇된 삶을 살면서 범죄를 반복하는 습벽을 체질화 하였다는 행위자 책임(인격형성책임)에 있다고 한다.³⁴⁾ 상습범 가중이 책임주의에 위배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책임주의에 위배된다고 보는 견해는 상습성은 행위자의 정신이나 인격의 흠결로써 치료의 대상이며 오히려 책임감경사유로 보는 것이 옳으며³⁵⁾, 상습성의 판단 기준이 오직 법관에게 일임된 것은 법관에게 재량을 지나치게 부여한 것으로 자의적 해석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³⁶⁾ 이에 대해 책임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는 행위자 책임을 기초로 행위자의 인격형성 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 책임성 판단이므로 책임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³⁷⁾

33) 법인에 대한 형사제재의 하나로서 공표제도에 관해서는 박기석,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213-222면 참조.

34) 원형식, “상습범과 누범의 가중처벌의 문제”,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겨울, 570면.

35) 이재상, 형법각론, 66면.

36) 배종대, 형법각론, 101면.

37)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2002, 766면; 최병각, “상습범의 범제와 개선방향”, 비교형사

생각건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객관적 범죄행위와 결과를 주된 근거로 삼아야 한다. 불명확한 실체인 범죄를 계속 반복할 습벽이라는 점을 들어 형을 가중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위배된다고 하겠다. 만일 과학적으로 이러한 습벽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는 치료, 상담, 사회봉사명령 등을 통해 치유해 나갈 대상이지 형벌을 더 부과할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쉽게 가중처벌을 하는 도구로 이용되거나 전과자를 사회 밖으로 배척하는 수단으로 상습성이 이용된다면 이는 반드시 배격되어야 한다.

2. 누범가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법 제35조 제1항은 누범의 개념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고 정의하고 동조 제2항은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특별법에도 누범가중 규정이 있다.³⁸⁾

누범가중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인정하는 견해도 그 근거를 행위자책임에서 찾는 견해와 행위자책임,³⁹⁾ 행위책임에서 찾는 견해,⁴⁰⁾ 행위책임, 재범방지라는 형사정책적 배려 등의 복합적 이유에서 찾는 견해⁴¹⁾로 나뉜다.

행위자책임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견해는 처벌을 받은 자가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범죄의 반복이라는 반사회적 위험성이 큰 것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가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위책임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견해는 전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해 범 죄역지효과가 발생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또다시 범죄를 범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제고된다는 것이다.⁴²⁾

이에 대해 누범가중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형벌이 미래를 향한

법연구 제3권 제2호, 263면.

38)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3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39) 신동욱의 8인 공저, 형법총론, 1987, 512면.

40) 손동권, “상습범 및 누범에 대한 형벌가중의 문제점”, 형사판례연구(4), 1999, 105면.

41) 현재 1995. 2. 23. 93헌바43 결정.

42) 원형식, 앞의 논문, 572면.

경고효과를 지니는 것인지 의문이고,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였다고 형벌이 2배까지 가중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한다.⁴³⁾

생각건대 누범가중이 동종의 고의범이 연속될 때 필요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⁴⁴⁾ 형벌의 교화효과를 부인하고 범죄행위를 일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전 범죄행위도 형벌에 의해 처벌되었고, 후의 범죄행위도 적지 않은 형벌의 폭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정형의 상한이 그리 낮지 않은 상황에서 그 법정형의 상한까지 형을 선고한다면 굳이 누범가중을 통해 더 장기의 형이 필요하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범죄 선고형이 하한에 가깝게 선고되는 현실에 비추어 당해 범죄의 법정형의 폭을 넓게 활용한다면 누범가중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자는 누범과 같은 상황도 포함하여 상한을 정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VII. 특별형법의 법정형 정비

특별형법 중 형사특별법의 가중처벌 규정을 폐지하자는 것이 학계 전반적인 주장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형사특별법은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구성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형법전의 구성요건을 기본으로 행위 수단이나 결과 등에 차이를 두고 법정형을 가중시켜 놓고 있다.

형사특별법의 불필요함과 더 나아가 폐해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부 견해는 형사특별법의 전면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⁴⁵⁾, 또 다른 견해는 필요한 몇몇 규정을 형법에 흡수하고 나머지 규정은 모두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⁴⁶⁾

43) 안동준, “누범가중의 실효성과 타당성”, 비교형사법연구 제2권 제1호, 2000, 84면; 허일태, “형사실체법 정비를 위한 근본적 고찰”, 426면.

44) 원형식, 앞의 논문, 581면.

45) 허일태, 앞의 논문, 413면; 오영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폐지의 당위성”, 형사정책 제17권 제2호, 51면.

46) 박기석, “형사특별법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법조 제578호, 2004, 141-166면 참조.

이러한 주장의 가장 큰 이유는 형사특별법의 법정형이 과도하게 무겁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과도하게 무거운 법정형은 국민에게 형벌을 통해 순간적으로 겁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안정된 범죄적 발 및 처벌, 범죄예방에 역효과를 줄 뿐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형사특별법을 대부분 폐지하는 정비방안을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행정형법의 정비도 요구된다. 행정형법은 형사특별법과 달리 중형주의의 폐해가 그리 심한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형벌규정이 꽤 많이 잔재하고 있다. 즉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 규율할 수 있는 규정, 형법전의 범죄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등이 그것이다.⁴⁷⁾ 이러한 규정들을 폐지하거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형법에 많이 규정되어 있는 법인에 대한 처벌을 새로운 시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구조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형벌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를 상향조정하고,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형벌 - 조업정지, 단수단전, 공표 -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VIII. 결 론

이상에서 우리나라 법정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사형은 반드시 그리고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은 적정성의 면이나 효율성의 면 어디서도 존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 ② 자유형에 있어서는 징역과 금고는 징역으로 단일화되어야 하며, 사형폐지에 대비하여 장기자유형을 도입하여야 한다. 범죄 사이의 법정형이 불균형한 경우를 살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③ 벌금형의 비중을 높이고 경제변화에 따른 벌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법인에 대한 고액의 벌금형을 마련

47) 행정형법의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박기석, “우리나라 행정형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인권과정의, 제341호, 2005, 163-173면 참조.

해 두어야 한다. 일수벌금제는 타당하지 못한 제도로써 도입해서는 안된다.

④ 명예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⑤ 상습범과 누범도 폐지되어야 한다.

⑥ 형사특별법은 대부분 폐지되어야 하고, 행정형법도 입법의 기술상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는 폐지하거나 행정질서별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 외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로 형벌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형벌은 전통적인 형벌체계에 머물러 형벌부과 효과에 의문이 있다. 형벌부과의 목적이 단순한 응보가 아니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꾀하는 것이라면, 보다 다양한 형벌을 마련하여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형벌은 삭제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형벌들을 고안해 낼 필요가 있다. 1995년 형법개정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도입한 것과 같이 계속하여 현대 사회에 부합하는 형벌이 필요한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 제한, 운전면허 박탈 등이고,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해산, 조업정지, 단수 단전 등이다.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Statutory Penalty

Park, Ki-Seok*

There are many problems in criminal sanction system as well as criminal prescriptions. Death penalty still remains in Korean criminal law. The period of imprisonment in Korean specific criminal law is too excessive. Compared to imprisonment period, the amount of fine is so small that it could not prevent crimes. The criminal sanctions of disqualification can't operate efficiently in not only preventing crimes but rehabilitation of criminals.

So remedies of these problems are below. First, Death penalty should be abolished as soon as possible. Killing a man is beyond operation of law. And we can find the fact through an actual proof that Death penalty can not has power to prevent crimes. Second, the specific criminal law that threat the people with very long imprisonment should be abolished. but we have to prepare long-term imprisonment in criminal law because the substitute imprisonment system is necessary as death penalty would be abolished. Third, it is preferable that the amount of fine would be heightened. In modern society most causes of crimes are avarice of obtaining money. So the criminal sanction which deprive criminals of money obtained from crimes. The present amount of fine is so small to operate this functions. Forth, the cruel and unusual criminal sanction should be abolished. The representative criminal sanction which is cruel and unusual is publicity of criminals. Through internet and newspaper the criminals to commit sexual offences to juveniles are published openly. This criminal sanction gives criminals published so deep dishonour that they could not live any more in Korean society.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aegu University, Ph.D. in Law

주제어 : 법정형, 사형, 중형주의, 벌금액, 일수벌금제, 법인, 명예형,
장기자유형, 형벌의 다양화

Keywords : crime prescription, Death penalty, fine, corporation,
disqualification